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814호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2005호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회 사 무 국	2
○ 조 례	제2006호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기 획 예 산 과	4
○ 조 례	제2007호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문 화 관 광 과	8
○ 조 례	제2008호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문 화 관 광 과	12
○ 조 례	제2009호	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 화 관 광 과	15
○ 조 례	제2010호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체 육 진 흥 과	18
○ 조 례	제2011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 생 교 육 과	25
○ 조 례	제2012호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 생 교 육 과	27
○ 조 례	제2013호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 업 지 원 과	29
○ 조 례	제2014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복 지 정 책 과	31
○ 조 례	제2015호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 성 가 족 과	33
○ 조 례	제2016호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여 성 가 족 과	35
○ 조 례	제2017호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환 경 보 전 과	39
○ 조 례	제2018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교 통 행 정 과	45
규 칙				
○ 규 칙	제1123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복 지 정 책 과	49
공 고				
○ 공 고	제1408호	수용재결서 정보 공시송달 공고	치 수 과	55
○ 공 고	제1441호	남동구 공공체육시설(서창동다목적체육센터)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체 육 진 흥 과	57
○ 공 고	제1448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59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8. 3.

남동구 조례 제2005호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타법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사항 반영 : 안 제9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안 제12조제2항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범위 확대(10일 → 15일) : 안 제12조제3항제2호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8. 3.

남동구 조례 제2006호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남동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중앙정부·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시·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관련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까지 남동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공모사업 유치 및 효율적인 추진 필요

□ 주요내용

- 공모사업, 담당부서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사항 (안 제3조)
-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와 추진방법 (안 제4조~제5조)
- 공모사업 의회보고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 공모사업 관련 표창 규정을 정함 (안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 8. 3.

남동구 조례 제2007호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와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 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구가 소유·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9조(점자정보화의 촉진) ① 구청장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구민들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점역·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제6조)
- 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안 제7조)
- 점자의 보급과 지원(안 제8조)
- 점자정보화의 촉진 및 점자문화의 확산(안 제9조 ~ 제10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안 제11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 8. 3.

남동구 조례 제2008호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남동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4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청년 문화예술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
3. 청년 문화예술인, 청년 문화예술 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문화예술 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의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청년 문화예술사업(안 제5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 8. 3.

남동구 조례 제2009호

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남동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및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내 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③ 그 외에 지원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내 숨어있는 인적·물적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자생력을 갖춘 남동구 관광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안 제5조)
- 지원 사업(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 8. 3.

남동구 조례 제2010호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동구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적 봉사활동을 말한다.
2. “영유아 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들의 균형 있는 신체 발육을 위해 성장과 발달 과정에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체육”이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체육의 육성과 진흥

제4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 목표와 추진방향
2.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3. 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운용 지원 사업
4.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구청장은 우수 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지원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2.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지원
3. 국내·외 대회 개최와 지원·참가
4.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활동의 지원
2.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3. 각종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와 지원·참가
4.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생활체육 단체가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할 경우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한 종목당 연 1회에 한한다.

제7조(스포츠복지의 진흥) ① 구청장은 스포츠 소외계층인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복지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페인 운동 전개
2.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컨설팅 사업
4. 관련 체육단체의 육성과 진흥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직장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내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체육동호인조직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할 수 있다.

제9조(학교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 선수나 운동경기부에 장학금 또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영유아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영유아 체육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영유아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인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체육대회)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과 체육증진 등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남동구 체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단체에 전국종합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외 대회의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 구청장은 체육활동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표창장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생활체육 보급·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구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④ 상장은 남동구에서 개최 또는 지원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운영에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운동경기부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⑤ 포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남동구의 체육발전 또는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사업

2. 각종 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3. 국내·외 대회의 유치와 홍보

4.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전문·생활·장애인·학교체육의 육성 또는 진흥 사업

6.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내 체육시설(체육관, 운동장 등)을 개방할 경우 이에 필요한 시설이나 경비

7.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체육진흥협의회

제15조(체육진흥협의회) 법 제5조에 따라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는다.

1.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또는 활용
3. 공공체육시설 또는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의 위탁 관리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심의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 남동구체육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체육전문인사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장 체육진흥인사위원회

제21조(체육진흥인사위원회) 체육 인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선수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감독, 코치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23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체육진흥협의회 위촉직 위원

제24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5조(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세부 사항은 제20조를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6조(비밀유지의 의무) 협의회와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구청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7조(준용) 그 밖에 협의회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직무, 운영,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중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②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중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기존 조례에 담지 못한 체육진흥 계획 수립 사항을 반영함
-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 회의 참석자가 지켜야 할 비밀유지 의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반영함
- 그 밖에 잦은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반영함

□ 주요내용

- 체육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사항 신설 (안 제4조)
- 체육대회의 개최·운영 사항 신설 (안 제12조)
- 체육진흥협의회와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관련 업무담당 국장을 추가 (안 제17조, 제23조)
- 비밀유지 의무를 체육진흥협의회까지 확대 (안 제2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8. 3.

남동구 조례 제2011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도서관법」 제27조, 제29조 및「독서문화진흥법」 제3조”를 “조례는「도서관법」 제29조 및「독서문화진흥법」 제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매체”를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법 제8조”를 “법 제46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도서관법」이 개정(2022.12.08.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정된 도서관법 조항 반영
(안 제1조, 제3조, 제20조, 제22조, 제39조, 제40조)
- 일부 용어 정비(안 제2조)
- 조례 명칭 현행화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40조, 제41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 8. 3.

남동구 조례 제2012호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서”를 “도서관 자료”로 한다.

1. 1,000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 구비

2.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이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제6조제1항 중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을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으로,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으로, “있다”를 “있으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도서관법」제31조의2제1항”을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이 개정(2022.12.08.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 정의 변경(안 제2조)
-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기준 변경(안 제5조)
- 작은도서관 등록 규정 변경(안 제6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 8. 3.

남동구 조례 제2013호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분야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금지원 우대)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과 우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성 기업인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여성기업 홍보 및 인식개선 관련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안 제4조제1항제5호)
- 자금지원 우대 의무에 관한 실질적 이행사항 규정 : (안 제5조)
- 그 밖에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 8. 3.

남동구 조례 제2014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수급자”를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0조제5호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은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업성적 또는 예체능 분야 등에서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이 되는 중학생, 고등학생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제13조제1호 중 “학생”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학생 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 사회복지기금 장학금 지급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장학금 지급대상의 명확화(안 제10조제5호)
-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 따른 대상 명기(안 제12조제1항)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 8. 3.

남동구 조례 제2015호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보직관리”를 “보직 관리”로, “남녀평등”을 “성평등”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를 “공무원의 성별 균형적 인사관리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인·한부모·조손 가구 및 1인 점포 등에 대한 안심 안전물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심 안전사업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의”를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민참여단”을 “구민참여단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3호 중 “품위손상 등”을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미참여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범죄취약가구 안심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및 구민참여단의 구성 기준 정비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주요내용

-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균형인사 조항 정비 : 안 제10조제3항
-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준 마련 : 안 제14조제1항
-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구성 기준 정비 : 안 제20조제3항
-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해촉 기준 정비 : 안 제28조제4항제3호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 8. 3.

남동구 조례 제2016호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센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안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등 (안 제6조, 제7조)
- 대안교육기관 지원 (안 제8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 지원센터의 지도·점검 (안 제10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 8. 3.

남동구 조례 제2017호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복지증진”을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 등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경광등 또는 경고음이 작동하며,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부재 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음성 연결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

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의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칸 측면의 하단부 등 빈 공간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다. 그 밖에 안심거울 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장치 및 시설

제5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 명령에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 명령에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부착 의무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관리 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20	30
4.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5. 법 제14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5	10	20

유료화장실 ☐ 신고서											처리기간	
											☐ 변경신고서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m ² , 화장실 면적 : m ²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 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 표 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2021.7.20.)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전관리 시설의 목적 및 정의와 종류(안 제2조제2호)
-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범위(안 제5조의2)
- 맞춤법 교정 및 중복되거나 잘못된 인용 조문 등의 수정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 8. 3.

남동구 조례 제2018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본문 중 “1.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한다.

제5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9.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1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0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이용자: 100분의 50 감면(월 정기주차 제외)

제2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의 협약을 통하여 결정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보조금 등의 지급기준(제28조 관련)

1. 내집안 주차장 설치 비용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의무유지기간
대문·담장 철거 후 주차장(경형·일반형) 설치 시	· 담장(대문) 철거 · 주차면 조성, 조경시설 · 개방형(수목)담장, 투시형 대문 · 방범시설(방범창, 현관문, 무인방범시스템)	5년
아파트 내 추가 주차장 설치 시	· 주차 노면 정비 : 주차장 포장보수, 주차구획 등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 내 분리시설(경계석, 웬스, 조경시설 등)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물 설치 · 방범시설	5년

2.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개선 비용 지원

대 상	지 원 내 용	의무개방기간
주차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건축물	· 주차 노면표시 정비 ·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등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웬스 등) ·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기타 시설물 · CCTV 설치비용 및 방범시설 ·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2년
기존 개방 건물 추가보조 (보조받은 날로부터 2년 경과)	· 주차구획정비 · Car Stopper설치 · 주차장 포장 등의 시설보수 비용	2년
○ 기준개방시간 : 평일·토요일 19시~익일 7시 30분, 일요일·공휴일 24시간 ○ 개방시간은 건축물 사용(또는 영업)시간 외 유희시간에 따라 남동구청장과 협의로 조정 가능 ○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3. 학교 부설주차장 비용 지원

대 상	지 원 내 용	의무개방기간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시 (소규모 주차장 추가설치 포함)	기존 주차장 개방 시설개선비용 또는 개방을 위한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비용 최대 20,000만원 범위 내 지원 ○ 기준개방시간 : 평일·토요일 19시~익일 7시 30분 일요일·공휴일 24시간 (※ 개방시간은 남동구청장과 협의로 조정 가능)	5년
학교 내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시	공영주차장에 준하여 운영될 주차장 건설비용 100% 범위 내 지원	20년
○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약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신설하고자 함
- 주차장 개방사업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개정 :
(안 제5조제9호)
-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 신설 :
(안 제5조제13호)
- 보조금의 지원방법 개정 : (안 제28조)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8 개정

규 칙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8. 3.

남동구 규칙 제1123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동구 관내에 주소를 둔 수급자의 중학생·고등학생”을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로, “학생으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학교장”을 “학교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으로, “받은 학생”을 “받은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학생”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생을”을 “사람을”로, “가정의 학생”을 “가정”으로, “학생 순”을 “사람 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학생”을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2.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연 락 처	
생년월일	(남,여)	보호자와의관계	
학 적	☐ 유 학교 학년 반 (과) ☐ 무		
3. 장학구분 : ① 성적장학생(), ② 특기장학생(), ③ 모범장학생()			
4. 가구특성 및 재산사항 등			
중증장애 세대여부	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 중복장애등()	대상자와의 관 계	
소득인정액	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 계좌번호 : 은행명(), 번호(), 예금주()			
첨부 1. 성적장학생 : 성적증명서 2. 특기장학생 : 입상 상장 또는 학교장 추천서 3. 모범장학생 : 학교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 추천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위 대상자를 ()년도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동장(직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학교장(청소년복지시설장) 추천서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시설명)			
추천분야			
추천사유			

작성자 : (인)

년 월 일

000 학교장(청소년복지시설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대상자 명단

○○ 동 행정복지센터

[illegible]

※ 작성요령

- ① 추천서는 소득인정액이 낮은순으로 작성
- ② 성적장학생의 '성적점수'란은 성적증명서, 특기장학생의 '상장 또는 추천서'란은 상장 또는 학교장 추천서, 모범장학생의 '추천서'란은 학교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추천서를 확인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장 학 증 서

성 명
생년월일

위 장학생은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년도 ()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사회복지기금 장학금 지급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 따른 정비(안 제3조제2항, 별지서식)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408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도림동 소곡소하천 정비사업(1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3. 6. 23.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3. 8. 3.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도림동 소곡소하천 정비사업(1단계)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40-9 ~ 621-1 일원
3.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4.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치수과(☎032-453-8463)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5. 공시송달 대상: 첨부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기재와 같음
6. 공시송달 사유: 주소불명 등
7.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3. 8. 3. ~ 2023. 8. 17. (15일간)

8. 기타

가.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 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첨부」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연번	성 명	송달주소	비고
1	이*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0*	
2	이*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0-4*4	
3	이*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5*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441호

남동구 공공체육시설(서창동다목적체육센터)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남동구 공공체육시설(서창동다목적체육센터)에 신규 설치 예정인 CCTV에 대하여 설치 위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3.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2023년 공공체육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중 CCTV 추가 설치
2. 시 행 청 : 남동구청
3. 설치장소

연 번	위 치	설치대수
1	서창동다목적체육센터(남동구 장아산로190번길 22)	4

4. 예고기간 : 2023. 8. 3.(목) ~ 2023. 8. 22.(화)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장소 : 남동구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층 체육진흥과))
6. 문의사항 : 남동구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032-453-628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4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 및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 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 및 제44조의2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대 상 자: 김*홍 등 3건
- 공고기간: 2023.8. 3. ~ 2023. 8. 18. (15일간)
-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				
성 명	차량번호	주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김*홍	인천82바**2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정*석	인천84배**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차*철	인천83바**8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5.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T. 032-453-2915)로 직접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 8. 3.

남 동 구 청 장